

의안
번호

390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1. 10. 20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임 현 주 의원 외 13인

나. 의안번호 : 제390호

다. 제출일자 : 2021. 10. 07.

라. 회부일자 : 2021. 10. 08.

2. 제안이유

-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(안 제1조~안 제3조)
- 나. 예산확보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다.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(안 제5조~안 제6조)
- 라. 관리주체, 정기점검 등의 유지관리, 사무의 위탁 및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위한
대장작성·관리등에 관한 규정(안 제7조~안 제11조)
- 마.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(안 제12조~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8조제1항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1. 10. 07. ~ 2021. 10. 13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제정취지 등

-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- 야외운동기구는 특성상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나, 이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운동기구의 노후·파손 등으로 사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.
- 이런 배경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“야외 운동기구 세부 관리 기준 마련(조례·지침)” 및 “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”을 신설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 바, 전국 71개 지방자치단체, 서울시는 11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현재 성북구 내 야외운동기구 설치 현황을 보면 도시자연공원, 쉼터, 정릉천 등 54곳에 822기 설치되었고 이중 2곳, 9기는 영조물배상공제 미등록된 것으로 조사되었음.

〈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〉

(2021.10월 현재)

부서명	위치	설치내역	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여부	관리주체
합계	54곳	822기	813기 등록 9기 미등록	
공원녹지과	북한산도시자연공원 등 48곳	667기	등록	공원녹지과
도시재생과	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1곳	3기	해당없음	도시재생과
어르신복지과	화랑로5길8 (월곡2동경로당 옆) 1곳	6기	미등록	어르신복지과
치수과	성북천 등 4곳	146개	등록	치수과

□ 주요내용

- 제정안은 야외체육시설의 설치장소에 따른 관리부서 외의 시설 전체의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총괄부서를 지정하는 등 관리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,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자 하였음.
- 또한 안전한 운동기구 이용 및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강화 및 이용주민의 피해보상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·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□ 검토의견

- 본 제정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와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일제점검 시행을 통해 안전한 시설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 계 법 령

□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제8조(지방 체육의 진흥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□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□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4조(생활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·군·구 :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·외 체육시설
2. 읍·면·동 :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